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56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8월 25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개정(법률 제 12687호, 2015.1.1. 시행)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3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붙임자료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영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5
----------	-----

발의연월일 : 2016. 8. .

발의자 : 안영수 · 김경선 ·
박병만 의원

(찬성자 4명)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개정(법률 제12687호, 2015.1.1. 시행)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및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업
2.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 3. 젓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 4.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축산법 - 제2조(정의)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

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양축가 축산업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 일부 보조

나. 관련조문

-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홍보에 관한 사업
 - 6개 사업 714,000천원
 - 【시비 295,600(41%), 군·구비 295,600(41%), 자부담 128,800(18%)】
- 2)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만들기 사업
 - 4개 사업 1,759,700천원
 - 【시비 557,695(32%), 군·구비 557,695(32%), 자부담 644,310(36%)】
- 3) 젓소 사육농가 복지 증진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 1개 사업 78,800천원
 - 【시비 23,640(30%), 군·구비 23,640(30%), 자부담 31,520(40%)】

나. 추계 결과

- 총 사업비 : 2,552,500천원
- 【시비 876,935(35%), 군·구비 876,935(35%), 자부담 798,320(30%)】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군구비+자부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 붙임

4. 작성자

경제산업국 농축산유통과장 한 태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비 고
세입								
	소계							
세출	축산업 육성 및 지원	2,552,500	2,680,125	2,814,131	2,954,838	3,102,580	14,104,174	
	소계	2,552,500	2,680,125	2,814,131	2,954,838	3,102,580	14,104,174	
재원 조달		2,552,500	2,680,125	2,814,131	2,954,838	3,102,580	14,104,174	
국 비								
시비	소 계	876,935	920,782	966,821	1,015,162	1,065,920	4,845,620	
	일반회계	876,935	920,782	966,821	1,015,162	1,065,920	4,845,62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876,935	920,782	966,821	1,015,162	1,065,920	4,845,620	
민 간								
자부담		798,630	838,561	880,489	924,514	970,740	4,412,934	